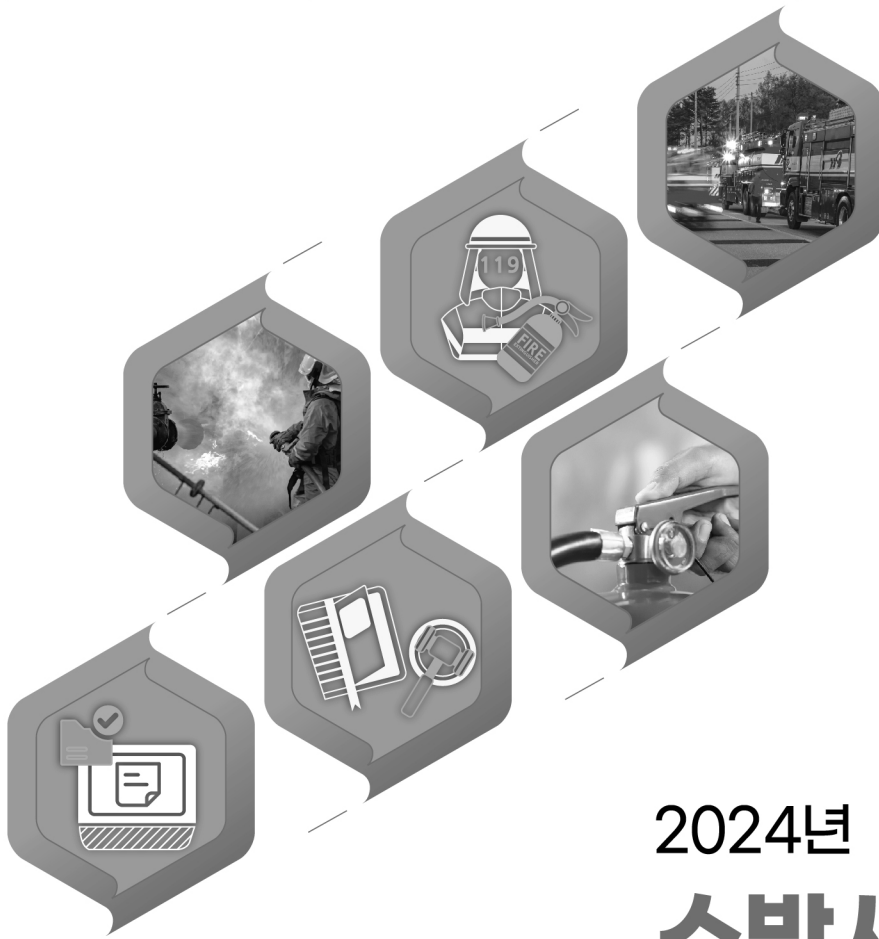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61000-000080-10

www.nfa.go.kr



2024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일러두기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3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7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4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17
5.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1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3
7.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7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34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54
1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72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80

II. 화재예방법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95
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00

III. 다중이용업소법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113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117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121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126
5. 기타 질의사항 등	133

Contents



IV. 초고층법

1. 예방 및 대비	143
------------------	-----

V.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의 등록	151
2. 소방시설업의 운영	154
3. 착공신고	155
4. 감리	157
5.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159

VI. 화재안전기준(기계분야)

1. 옥내소화전설비	165
2. 스프링클러설비	170
3. 피난기구	183
4. 제연설비	186
5. 가스계소화설비	187
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188

VII. 화재안전기준(전기분야)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95
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199
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01
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03
5. 소방시설 배선	208
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10
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11

I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5.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7.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1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건축허가등의 동의^[약칭] 소방시설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소방등의 관련 절차등
[소방시설법 제6조]

관계 법령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 등의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의 1

Q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2019. 12. 30.인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21. 2. 4.]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1

A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인허가 서류를 갖추어 건축허가등의 접수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을 합니다.

A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2019. 12. 30.이므로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의 취소 없이 건축허가 사항이 유지가 되었다면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21. 2. 4.]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1**

Q 공사 중 건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2,973㎡에서 3,060㎡으로 면적이 변동되어 소방기계설비(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 중임에도 건축허가동의로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2**

A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변경된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1**

Q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②항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대상이지만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3**

A 용도변경의 신고사항은 「소방시설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여 소방동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행정기관에서 소방서장에게 협의통보 한다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A 또한 용도변경의 신고사항도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에 해당되며 「소방시설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관 계 법 령

제7조(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질의 1

- Q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소방동의를 해야 하는지?



회신 1

- A 장애인용승강기 설치행위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Q 숙박시설 지상1층으로 동별 연면적 400㎡ 미만 소방동의 대상 아님에도 연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동의 대상인가요?



회신 2

- A 건축법 상 숙박시설에 해당되면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 13.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허가등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착공신고 시 도면 검토 과정이 진행되기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이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2조]

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 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Q 법령 개정에 따라('22. 12.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철거가 가능하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요건이 있는지?



회신 1

- A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합니다.
- A 다만, 2023. 11. 2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관련 절차 안내 받으시고 철거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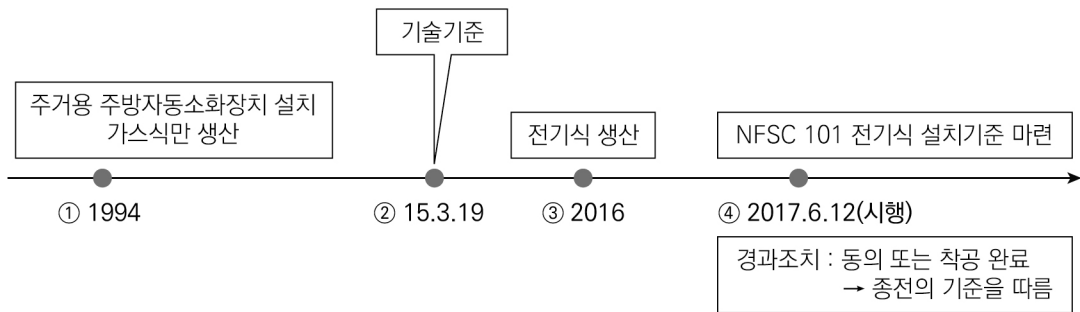
질의 2

Q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연혁이 궁금합니다.

회신 2

A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자동식소화기)의 연혁은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시행일	법령	대상	경과조치
1994. 7. 20.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	•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1997. 9. 27.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	•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2004. 5. 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아파트	
2012. 2.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은 2013. 2. 5.까지 소급하여 설치
2023. 3.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주거용: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 상업용: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대규모 점포)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집단급식소)



[명칭변경] 자동식소화기→주거용 자동소화장치('12. 6. 11.)→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17. 4. 11.)

[열원변경] 2017. 6. 12. 이후 가스→전기로 열원이 변경된 경우 주방자동소화장치 변경(가스식⇒전기식)



질의 3

- Q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신 3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를 임의설비라 하고 그 중 관계인이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위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설비라고 합니다.
- A 자진설비의 설치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최종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A 완공검사증명을 받은 설비는 제출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의 1, 2층의 설비 이므로 이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A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3~5층 임의설비를 기존 자진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 해당 설비는 임의설비가 아닌 자진설비가 됩니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A 다만, 건축물의 3~5층 부분만 기존 소방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설비로 보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진설비 관련 용어정의 및 관련법령 적용기준]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구 분	화재안전 기준 적용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위반시 처벌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	○	○	○	○	○	○
대체설비	○	△ ¹⁾	○	△ ²⁾	○	○	○
자진설비	○	△ ³⁾	X	X	○	○	X
임의설비	X	X	X	X	X	X	X

-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 4**

Q 이동 가능한 방음부스에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4**

A 해당 대상물은 이동식 구조이며, 단순한 개인전화용 방음부스로서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에 의해 방호 가능한 방호대상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음부스를 하나의 실로 보기는 어려워 방음부스 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및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Q ① 본 병원은 지하1층 ~ 지상5층의 집합건물 내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을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021년 소방시설법령_질의화신집(소방청)을 보면 5층 이상인 건물이더라도 의료 기관에 해당건물에 4개층만 사용하고 있다면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개정된 법령에도 같이 해석하여 설치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치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② 본 병원이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이라면 병원 내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 각 2개만 구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인명구조기구 각 2개씩을 층별(2층, 3층, 4층, 5층)로 모두 구비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③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이라고 한다면 법령이 개정된 이후 언제까지 구비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5

- A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1층/지상5층 건물 중 4개층을 병원용으로 사용 중에 있으면 병원용도의 4개층에 층별로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2개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 A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2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전부터 4개층만 병원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경과조치에 따라 인명구조기구를 비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 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질의 1

Q 옥외에 가설건물을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설건물을 설치함에 있어 지중에 매립된 소방 배관(옥외소화전 배관)을 철거 후 재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1) 소방배관 철거 후 재설치할 경우 소방감리 및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 여부?
- 2) 소방배관 철거 시 단기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소방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지?
- 3)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A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3항 제1호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에 해당되어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공사 감리자지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A 해당 소방공사 진행 중 소방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다면 소방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023. 9. 8.시행 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

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행동요령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A** 기존 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는 없으며 해당 소방시설공사 현장에는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라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Q**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8일 시행되어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소방시설의 점검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도 포함되어 있는 것가요? 제3조 행동요령의 각 호는 행동요령을 실시하는 순서를 뜻하는 것인가요? 즉, 1호부터 시작해서 2호, 3호, 4호 순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만약 순서를 뜻한다면,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 여부(3~5호)를 확인 하기 전에 먼저 119에 신고(2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화재인지 여부(3~5호)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실제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만 119에 신고(2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2

- A** 해당 고시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점검 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요령의 번호는 순서를 뜻하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질의 3

- Q** 아파트 세대 내 누수확인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직원이 임의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약 4일간 잠그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심지어 스프링클러설비 주변 천장이 아닌 옆 벽면에 물이 흘렀던 상황입니다.



회신 3

- A**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소방배관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관계 법령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질의 1

Q 1차 건축허가가 2010년도 나왔고 변경신청하여 최종 4차 건축허가를 2021년 4월에 받았 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점을 1차로 봐야합니까? 4차로 봐야합니까?



회신 1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최초의

건축허가가 취하 또는 반려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1차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내진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의 2

Q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

A 「소방시설법 시행령」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대상물이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구조안전확인대상물인지 여부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만약 기존에 구조안전확인 대상물이 아니었지만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된다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3

Q 2002년도 공장건물입니다. 펌프가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공동구를 통해 공장까지 1차측배관이 연결됩니다. 해당구간에는 모두 내진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상 1층 일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전체 바닥면적은 60,084㎡ 이며 증축은 500㎡ + 150㎡ 2곳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제연설비와 내진 외 모든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각 설비가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해당구간에 내진 적용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3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각 설비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되는 설비에 한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수직방향 증축 등과 수평방향 증축 등으로 구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소방시설(기존 시설의 증설 제외)로 인해 교체된 설비[수조, 펌프, 주배관(증축부의 주배관)]등은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증축 등으로 교체 변경되지 않는 배관 등은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물의 경우 증축으로 소방설비가 신설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장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법 제16조]

I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6조]

관계 법령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1

Q 10세대 빌라는 복도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하나요?



회신 1

- A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현행 소방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시 복도 적치물로 인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또는 검사지도팀에 신고하시면 현장 계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 12. 1.부터 포함되므로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의 2**


Q 요양병원 치료시간 외 재활치료센터의 방화문에 시건 장치를 해도 되나요?

 **회신 2**

- A** 해당 방화문이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인지 여부를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A** 만약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에 해당할 경우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방화문 폐쇄에 해당 됩니다. 다만, 해당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또한,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화문 개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Q 아파트의 복도에 일체의 물건을 둘 수 없는지? 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거나, 일시보관, 즉시 이동, 자전거 일렬보관 등은 허용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허용되는 기준과 사례등이 있는지?

 **회신 3**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 등을 피난시설(복도, 계단등)에 적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 9. 28.)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는 제외할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법적 적치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적치물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시시정 및 조치명령을 부과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4

- Q**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 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데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4

- A** ①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의 피난 시 피난통로 상에 중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②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일 시 중문설치로 옥상으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동법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A** 다만,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니고, 4층 주택에서 피난층인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A** 해당 사항은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Q** 미닫이문 미서기문(슬라이딩 도어)또는 여닫이문등의 출입구가 세콤, 캡스등의 보안으로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길 때 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등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개방(잠금장치 풀림)되도록 하여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다중이용 업소가 아닌 곳)



회신 5

- A** 해당 문이 피난통로 상의 문인지 여부를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A** 만약 피난통로 상의 문일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동법 제61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① 피난을 위한 문이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을 경우 ②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개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소방시설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

I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5조]

관계 법령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Q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을 때 관리감독은 소방감리가 하는지? 건축시공사가 하는지?



회신 1

- A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임시소방시설의 관리·감독의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을 때 임시소방시설의 관리·감독은 소방감리의 업무인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인지?



회신 2

-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소방감리 업무 범위 및 「화재예방법」 제29조 제2항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로 보아, 임시소방시설의 관리·감독 의무는 소방감리원이 아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인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누가 관리해야하는지?



회신 3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I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30029호, 2019. 8. 6.>]

관계 법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30029호, 2019. 8. 6.>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 마목 1) 나)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 4), 같은 호 마목 3)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 라목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 Q 의료시설에 적용하는 강화된 기준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015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1일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로 허가받은 의료시설만

해당하는건지요 아님 허가일자 상관없이 모든 의료시설에 해당하는건지? 아님 부칙에 있을 때만 강화된기준을 적용하는건지?

 **회신 1**

A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 대상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소급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칙<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의료시설에 대하여 소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추후에 한번 더 개정되어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 4), 같은 호 마목 3)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질의 1

Q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시설법상 적법한지?



회신 1

A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강화된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 방법

【소방시설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소방시설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강화된 소방시설을 제1항 제2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방시설법 제13조에 따르는 소방시설과 대상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 될 때마다 해당 시설 및 대상에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강화될 수 있는 시설과 대상을 미리 규정해 놓고 관련 법이 개정 될 시에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소급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시설의 의미로 해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에 구체적 소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강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령의 보다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 전(2015. 7. 1.시행)	소방시설법 개정 후(2022. 12. 1.시행)
<p>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p>	<p>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7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I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계 법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②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질의 1

- Q 여관에서 기재사항 변경으로 관광호텔로 변경 승인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때 건축행위 없는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은 현재법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지?



회신 1

- A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위(용도변경)없이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숙박시설(여관) → 숙박시설(관광호텔)]에는 현행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적용하지 않으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현행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질의 2**

Q 현재 공장을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시 개정된 현행 소방법령을 적용하여 상수도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A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폐기물 자연발화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 발생이 잦으며, 화재 발생시 가연물이 많아 다량의 소화용수가 필요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으로 법령을 개정하였으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처분시설로 용도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Q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시설을 용도변경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되는 면적만 합산해서 법을 적용하는지?

예시) 2007년도 허가된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00㎡(근생 900㎡, 업무 100㎡)인 건물에서 업무용도 100㎡를 근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근생 1,000㎡로 변하여 용도변경 되는 100㎡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되는 부분이 1000㎡가 안되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3**

A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해당 용도변경 되는 면적만 합산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면 됩니다.

A 따라서 해당 예시의 경우 용도변경되는 면적이 100㎡이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4

Q 연면적 2,187.9㎡, 8층이고 근생 + 업무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입니다. 3층에 소매점(305.05㎡)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305.05㎡)으로 표시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시설법에서는 용도변경 시 현행법 적용하라는 문구는 있지만, 표시변경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표시변경도 용도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소방시설을 현행법에 맞춰야하는지 아니면, 표시변경과 용도변경을 다른 것으로 보고 표시변경은 소방시설을 현행법에 맞춰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다 보니 간이sp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4

A 건축물의 표시사항 변경은「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에 속하고 「소방시설법」 제6조 제2항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동법 제13조 제3항에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은 표시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며, 입원실이 있는 의원으로 표시변경 시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Q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1층당 면적 400㎡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5

A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 2층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되는 1, 2층에만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의해 해당 건축물은 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여야 합니다. 다만,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
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A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지참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계 법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0분+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 1

- Q 스프링클러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6층 오피스텔 건물에 7층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오피스텔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게 되면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1


- A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증축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구획 될 경우 해당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도 면제가 불가하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Q**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 2**

- A**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하지만,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의 산입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만약 승강장 부분의 바닥면적이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A**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려하는데,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 사이 창이 존재하여 이를 방화유리(비차열성 60분 확보 제품)로 설치하여도 기존 부분을 증축 당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3

- A** 화재시 연동되어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유리가 60분 + 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4

- Q** 1개층 일부 증축 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기존 부분의 층까지 후퇴하여 층으로 방화구획 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회신 4

- A**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할 수 없어 기존 부분의 층까지 방화구획을 변경하여 증축 층을 방화구획하는 경우 증축 층 전체를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 1. 공동주택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질의 1

Q 영내 간부숙소(대략 연면적 1,800㎡)가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사목에 해당되는 영내 간부숙소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간부숙소가 5층 이상이라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 등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라면 같은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2024. 12. 1.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본주택’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건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1

Q 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20조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에 해당되어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진행됩니다. 이미 다른구에서 2013년~2022년까지 4번을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저희 소방안전계획서 상 하륜소화기, 감지기, 경보기,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공개된 유사질의사례를 찾아보니 건설현장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저희와 같은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하여, 가설 건축물(가설흥행장)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1

A 가설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본주택 제외)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와의 협의를 통해 소화기 등 현장상황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I

소방시설법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6.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질의 1

- Q 건축법상의 용도는 운수시설(항만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교육연구시설 등)로 분류하여 적용 가능 여부
- Q 본 건축물은 인허가과정에서 항만 내에 건축되는 선박형태의 건축물이기에 건축허가시 운수시설(항만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으나, 본래 건축의 목적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자동하역 실험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1

- A 질의하신 대상물은 건축법 상 주용도가 운수시설이고 세부용도가 항만시설에 해당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6.운수시설 라.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건축법상 분류된 용도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질의 1

Q 학교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시설) 5호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역시 학교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회신 1

A 귀하가 질의하시는 대상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항만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면 해당 대상물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2호]

I

소방시설법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질의 1

Q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1

- A**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방법과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A**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이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소방시설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질의 1

Q 지하층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보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가능한지?

회신 1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0호 가목 3) 나)에 따라 주차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개별 용도로 보지 않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용도로 보아 주된 용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A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또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부설 주차장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보더라도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3)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Q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회신 2

- A 「소방시설법」에서는 건축법 상 건축물을 주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있으나, 지하구, 가스저장탱크, 전기저장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설비)과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터널(도로법) 등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A 높이 8m 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판단 관련 예외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분류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군사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1

Q 단순차양 목적을 위해 설치된 차양대(건축물)인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 설치대상 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1

A 소방분석제도과-3811(2021. 8. 4.)호 “군부대 내 업체호 및 차양대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지침 알림”에 따라 업체호 및 차양대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정비 및 주차 목적 보다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제21호 사목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여 ‘교정 및 군사 시설’로 용도구분하고, 설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2

Q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업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업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2

A 소방분석제도과-3811(2021. 8. 4.)호 “군부대 내 업체호 및 차양대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지침 알림”에 따라 해당 이글루형 업체호는 출입구 폐쇄형 업체호(공군)로 판단

됩니다. 업체호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정비 및 주차 목적 보다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여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구분하고, 설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기저장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3. 발전시설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질의 1

Q 정부과제로 ESS 개발중에 있습니다. ESS 설치 및 이용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작 중인 ESS는 정부과제 수행용으로, 계통하지 않고 연구개발용으로만 제작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NFSC 607 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 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한 자는 시공완료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제작 예정인 연구개발용 ESS가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도 NFSC 607을 적용하여 ESS 용 소방시설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1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3.발전시설 마.전기저장시설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또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시행 2022. 2. 25.]부칙 <제2022-1호, 2022. 2. 7.>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내용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에 해당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전기저장시설의 조건에 해당 된다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질의 1

Q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에 해당하나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 지하구로 보지 않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1

A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에 해당하나,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8호 가목 1)에 따라 전력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Q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지하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100미터의 남짓의 구간을 위해서 광센서 감지기 및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회신 2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질의하신 대상물이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가스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8. 2)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구에 설치해야하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질의 1

Q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법에 따라 주택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확인한 바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이 되던데 그럼 가목과 나목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지가 의문입니다.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이면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로 판단하고 가목에 의해 복합건축물로 안보는 것인지 나목에 의해 복합건축물로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1**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에 따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건축법 상 건축물의 분류로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A 따라서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일 경우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며,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닐 경우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질의 2**

Q 당 현장은 근린생활시설+공장+기숙사(일부)인 경우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데 복합건축물로 보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2**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0.복합건축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주택의 의미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을 의미합니다.

A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의 경우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1. 마. 8)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질의 1

Q 저희가 계획중인 주상복합은 총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아파트(지상 44층, 지상 높이 200미터 미만), 오피스텔(지하4층~지상25층, 지상 높이 120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지하1층~지상2층)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별동으로 계획하고 아파트와 그 외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과 진출입 통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회신 1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를 정할 때 “아파트 등”이 아닌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단서조항의 제정 취지는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주상복합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부분과 상업시설 부분을 구획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상복합건축물등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것이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Q 아파트 용도인 당 현장의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경로당·부대복리·경비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주차장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천장(바닥)의 관통부 배관·트레이 틈새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내화충전구조로 밀실하게 시공할 경우 화재전파 가능성이 없음으로 별표 2 비고 2. 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호 규정만 적용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석이 가능한지?



회신 2

- A 귀하가 질의하는 건축물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그 사이의 배관·트레이 틈새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내화충전구조로 시공하였다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닿고 있는 바닥 또는 벽에 배관 및 배선등의 일체의 관통부가 있는 경우, 내화충진 여부와 관련 없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연결통로’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칸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셔터 또는 60분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질의 1

Q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1공장, 2공장이 별개의 동이지만 별개 건물에 기송관으로 연결할 시 3개의 동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 A**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때 증가된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A** 다만, 설치된 기송관이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도면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을 협의 바랍니다.



질의 2

- Q** 건물간 이격거리에 상관없이 플랜트설비의 배관이 연결이 되면 하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인지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 : 건물 간 이격거리가 10m 이상이면 제외)



회신 2

- A**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건물간 이격거리에 상관없이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고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이 연결 되었다면 하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합니다.

9

특정소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질의 1

Q 상부장이 없는 보조주방에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 및 자동확산소화기로 대체 가능 여부?



회신 1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1)에 따라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보조주방은 자동확산소화기가 아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Q 해당 사업장은 공장이며, 공장에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제1호 나목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것에 집단

급식소에 해당이 되는데 1985년에 사용승인된 해당 사업장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급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2)는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가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숙사(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Q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지? 또는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지?

회신 1

A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합니다.

**운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 계 법 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 Q**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하는 경우 중 실내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운동시설에 그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바닥 불연재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 불연재는 거의 콘크리트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시설에서 이런 콘크리트를 써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 A** 운동시설의 경우 ① 물놀이형 시설 ②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법 개정으로 추가된 ②의 의미는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제로 사용되는 최종바닥이 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을 말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해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라) 노유자 시설
 -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바) 숙박시설

질의 1

- Q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이 1개 층을 뜻하는 것인지 전체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인지?

회신 1

- A 1개층이 아닌 해당 건축물 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들의 바닥면적 합계로 해석됩니다.


▶ **랙식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 계 법 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Q 건축물 내에 높이 10.0m, 바닥면적 1,500㎡가 넘는 랙식창고가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범위는?

 **회신 1**

A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8)에 “랙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는 예시 모든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Q 건축물 : 1층 - 랙식창고(천장높이20m) 100㎡ + 공장 700㎡, 2층 - 랙식창고(천장높이 20m) 100㎡ + 공장 700㎡, 3층 - 공장 700㎡ 이경우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인지요?

 **회신 2**

A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층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이상이므로 전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Q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 제10조 2항에 “랙크식창고”는 4m 또는 6m 마다 인렉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공장이면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 3**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8)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계없이 해당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I
 소방시설법

관 계 법 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 석 방 법

※ 입법 취지
 소방방재청공고 제2014-4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카. 6) 또한, 공장·창고의 외벽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을 30% 또는 50%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료로 보강하거나 구조로 보강하라는 취지입니다.**

	불연재료(재료)	내화구조(구조)	해당 여부
지붕	○	○	○
	○	×	○
	×	○	○
	×	×	×
외벽	○	○	○
	○	×	○
	×	○	○
	×	×	×

▶ **교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 계 법 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질의 1**

Q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회신 1**

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1) 가)의 수용거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규정된 수용거실로 보아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창살 등이 설치되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여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라면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7)에 해당하여 무창층에 해당하는 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질의 1

- Q** 지하1층 주차장 1000㎡ /지상 1~3 층 200㎡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일 때 지하주차장엔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는 600㎡인데 지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로 보고 전층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1~3층 면적만 보고 미적용하는지?



회신 1

- A** 지하주차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목 3)을 적용하여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층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이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중 부설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

Q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환기시설 등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최초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입원실이 별도로 없었는데, 이후 (1) 건물의 다른 층을 추가로 임차해서 입원실을 만들거나, 혹은 (2) 다른 별도 건물을 임차해서 다른 건물에 입원실을 만들었다면, 이 경우 새로 임차하는 입원실이 있는 층 또는 건물에만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 속보설비/환기시설을 구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진료공간 층 또는 건물에도 위 시설을 모두 구비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된 해석례를 찾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신 2**

- A** 증축 등 건축행위가 있을 시에는 신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 A** 현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1. 마. 2)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또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2. 사. 5)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물 모든층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실이 있는 시설(해당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 환기시설은 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바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목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질의 1

- Q 공작물인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800㎡이상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라면, 골프연습장과 분리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A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8호 나목에 해당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분리 여부와 관련 없이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면적이 800㎡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목 2)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Q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 1층이 필로티이며 Drive-through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럴경우 면적에 산입이 되는가요? 주차용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회신 2**

A 필로티 내에 주차용도 없이 드라이브 스루로만 사용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Q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전기실과 발전기실 사이 벽체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문(방화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전기실 및 발전기실을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간주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바닥면적을 300㎡미만으로 적용하여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회신 3**

A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방화구획의 설치에 대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별개의 방화구획으로 해석됩니다.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바목 5)에 전기실·발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은 물분무등소방설비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하나의 실이 아니라 별개의 실로 보아야 하며, 해당 각 실의 바닥면적이 30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4

- Q 정비소 내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20대이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바목 4)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그 외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놓는 작업장(판금 및 도색작업장 및 정비작업장 등)을 3)항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해석하여 그 부분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4

- A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놓는 작업장(판금 및 도색작업장 및 정비작업장 등)은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목 3)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Q 지하 주차장이 180㎡이고, 지상 1층 필로티 내 주차면적이 일부 20㎡ 이상 추가되어 총별면적을 합산할경우 200㎡ 이상이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물분무 소화설비를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 5

- A 소화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바닥면적은 하나의 층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의 면적으로, 질의하신 대상물의 경우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연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가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질의 1

Q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영화관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소방시설 설치 범위를 “해당 층, 해당 부분, 모든 층 등”으로 수정하여 국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표 제5호 가목 1) 및 2)의 해석은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가 제연설비의 설치 대상이며,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이 제연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해당 영화상영관”의 범위는 “영화를 관람하는 상영관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도, 매표소, 로비등 영화상영관으로 영업하는 장소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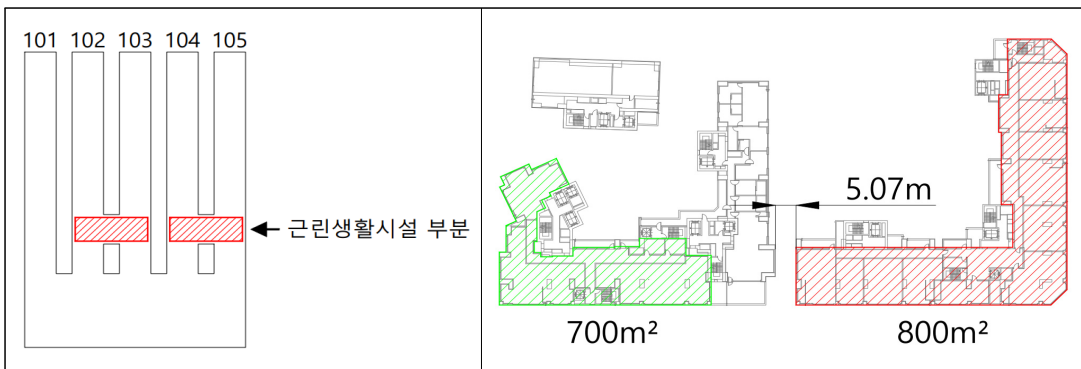
Q 골프연습장은 무대부가 없을 경우 무대부 바닥면적이 0㎡ 이므로 제연설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대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회신 2

A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에 무대부가 없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소방관계법령에 무대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상과 같은 공간에서 공연 및 경기등을 하고 조명시설, 무대막,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공간을 무대부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3

Q 이격되어 있는 동의 무창층 근린생활시설, 제연설비 설치 여부(지하층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회신 3

A 지하층이 연결되어 있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에 해당되지 않아 하나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각 동별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4**

Q 연면적 15만제곱미터 대단지 공동주택에 1. 지하층(무창층은 아님) 550㎡(거실면적)/공용 면적포함 1㎡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이 5군데 위치하여 있습니다. 2.각 근린생활 시설은 전부 지하1층에서 지상2~3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거실제연설비를 반영하려는 지하1층은 지하층이긴하나, 무창층은 아닙니다. 외부 대지가 지하1층위치에 있어 창호가 전부 있습니다. (단순 층 구분을 짓기 위해 지하1층이라 명칭합니다) 3.지하1층 주차장을 통해 서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보면, 지하층이긴 하나, 무창층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 별도로 550㎡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면적 포함 1000㎡ 미만입니다. 근린생활시설간의 거리는 16~70미터(수평거리)가량 띄워져 있습니다. (보행거리로 따지면 더 멀어집니다.) 이런 조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부합되어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이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4**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가. 3)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중 해당 부분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해당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에서 해당부분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된 의미임

A 따라서 건축법 상 지하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5. 가. 3)에 의해 지하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석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중 해당 부분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해당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에서 해당부분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된 의미임**

※ 제연설비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 전(2015. 7. 29.시행)	소방시설법 개정 후(2022. 12. 1.시행)
<p>5. 소화활동설비</p> <p>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p>	<p>5. 소화활동설비</p> <p>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p>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p>

1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



옥내소화전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Q 사용승인일은 1992년 9월 24일,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902.578인 대상물로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입니다. 건축허가일은 확인불가하며 지하층은 다방에서 유흥주점으로, 2층 독서실을 사무실로, 3, 4층 학원 및 독서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사항은 있지만 1층에 대해서는 용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옥내소화전 면제 기준에도 대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데 건물 내에 1층에만 옥내소화전이 없어 1층에 대하여 다른 면제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A 「소방법 시행령」[시행 1991. 1. 8.]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제1항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층 부분에 동력소방펌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3. 스프링클러설비

-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외조건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을 경우에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물분무등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설비)를 적용해도 문제 없는지?



회신 1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될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할수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사람이 상주하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순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장담할수 없어 “청정소화약제설비”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질의 2


Q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kg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회신 2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라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는 소화장치가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이며, 해당 장치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면 해당 구획된 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스프링클러설비 보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 설치면제 된다고 적혀있는데 '적합하게'라는 기준이 자동소화장치 팩케이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모듈러 방식으로 설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3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3. 스프링클러설비 면제 기준을 보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소화장치 팩키지방식, 가스계 모듈러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A 다만,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101)」 표 2.1.1.3 기준에 맞게 설치하셔야 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도 해당 대상물의 화재적응성에 맞게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질의 4

-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회신 4

- A 소방청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제외,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능과 동등 이상의 자동식 소화설비가 해당)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최종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6호]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6호

1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Q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80mm 상수도용 배수관은 설치되어있으나, 고지대라 수압부족이 예상되는데 상수도소화전을 대신하여 저수조로 설치 가능한지?

회신 1

A 해당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의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상수도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수도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화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수압이 현저히 부족할 정도의 고지대라면 관할 소방서 협의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6호 나목을 적용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연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7호]

I

소방시설법

관 계 법 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17. 제연설비**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 가목 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나, 별표 4 제5호 가목 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Q** 창문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노대가 설치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1**

- A** 해당 노대가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등이 없이 개방된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7호 나목에 따라 제연설비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샷시를 설치하는등 외기에 면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Q**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가목 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17의 가. 2) 에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배출구 및 유입구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으로 확인됨. 배출구와 유입구를 외벽등에 외기에 접한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상충되는 바, 배출구와 유입구의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로 대체할수 있는지?



회신 2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7. 제연설비 2)의 면제 기준에서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 “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시 연동되는 창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나 문 없이 직접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A** 배연창의 경우 평상 시 폐쇄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개방된다고 하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서 규정한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개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배연창의 설치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7. 제연설비 부분을 보면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의 설치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별도로 면제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화재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외기에 접하여 연기가 배출되는 상황’에는 ‘제연설비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첨부파일의 이미지처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노대사이에 배연창을 설치하여 화재 시 창이 개방되게 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가 면제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3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5. 7)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 나목에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기의 집적이 불가한 외기와 완전 개방된 노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제연설비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A** 배연창의 경우 평상 시 폐쇄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개방된다고 하나 연기의 집적이 불가한 외기와 완전 개방된 구조가 아니므로 제연설비의 면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Q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먼저 잡고 가야하는지 질의합니다(제연설비 기준?, 배연설비 기준?).



회신 4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5. 7)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건축법 상 배연설비의 설치와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 나목에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기의 집적이 불가한 외기와 완전 개방된 노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제연설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A 배연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

17.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 가목 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 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화재 시 연동되는 창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호나 문 없이 직접 외기에 노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별표 4 제5호 가목 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완전개방의 의미, 문, 창문없이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면제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최초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제22조, 최초점검 기준]

관계 법령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최초점검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

분 류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비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방식 포함
	스프링클러설비등	○	sp, 간이sp, 화재조기진압용sp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방식 제외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 설비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방수조·저수조	○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
소화활동 설비	제연설비	○	특피 제연설비 포함
	연결송수관설비	○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	



질의 1

- Q** 하나의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자탐, 옥내, 물분무등설비)에 가로 증축(연면적 300㎡, 자탐 설치)으로 연결 될 경우 최초점검 범위는?



회신 1

- A** 최초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건축물 등이 신축·이전·개축·재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고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대상은 기존 부분에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증설(자탐 증설)된 경우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Q** 별도로 기존 건축물 부속 동(자탐) 가로 증축으로 자탐 + 옥내 신규 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범위는?



회신 2

- A** 기존 동 및 부속 동(별동)이 별도 건물로 증축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부속동)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해서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또한, 기존 동과 연계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되어 있는 장치(수신기, 소화펌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Q** 하나의 건축물로 기존건물(자탐, 옥내)에 증축으로 가스계소화설비가 신규 설치할 경우는 최초점검 대상인지?



회신 3

- A** 기존부분에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신설(가스계소화설비)된 경우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체점검등의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관 계 법 령

별표 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가목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 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질의 1

- Q 견본주택의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건물 사용승인 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종합점검의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일이 확인되지 않는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1

- A 종합점검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에서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같은 법 별표 3 제2호 라목 2)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등의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관계 법령

별표 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 1)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2) 영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3) 영 별표 4 제5호 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질의 1

Q 이산화탄소 호스릴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에 해당은 되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는 물분무소화설비에 체크하고 배치신고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해당없음으로 체크하면 되는지?(호스릴 물분부소화설비 가감계수 적용 관련)

회신 1

A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가감계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나목 2) 에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 자체점검 시 가감계수는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 따라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체크하고, 배치신고 시 가감계수 적용 제외하기 위해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체점검 처벌 관련**
[소방시설법 제57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관계 법령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6항, 제37조 제7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소민센①)

- ④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단위(아파트 단지 등)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가능
예)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있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1개의 소방펌프, 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동에 소화수 공급 및 소방시설 감시·제어 가능

 **질의 1**

Q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회신 1**


A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 소방시설 자체점검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동)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A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1동, 2동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2동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8조(벌칙) 제1호에 따라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Q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는데 불량사항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주방자동 소화장치 미설치 14세대가 지적됐습니다. 입주자가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관리사무소 및 각 세대 과태료 처분, 조치명령 가능 여부

 **회신 2**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항에서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고,

A 관리사무소장은 소방법상 관리자에 해당되어 이행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A 또한, 각 세대에 대해서도 세대내 소방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 다만,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대해 각 세대에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미 이행시 같은법 제57조(벌칙) 제1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관련

[소방시설법 제25조, 제58조]

관계 법령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질의 1

Q 소방시설관리사가 학원의 한 과목을 유료로 강의를 해도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1

A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8항에 따라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직무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이중취업 금지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A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관계 법령

별표9(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 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질의 1

-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1호에서 “소방 관련 실무경력”의 내용은?



회신 1

- A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서 규정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의미합니다.



질의 2

- Q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중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다목 2) 라) 다중이용업 완비증명서발급 업무, 마)소방시설점검, 바)에 해당하는업무를 센터(파출소)근무 하는 경우도 인정되는지?



회신 2

- A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다목 2)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A 따라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다중이용업완비증명서 및 화재 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전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관계 법령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 2. 대표자
- 3. 기술인력

질의 1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으로 등록증 반납 조건이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및 폐업에서 휴업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같은규칙 제32조 제4항의 개정 취지가 소방시설관리업 사업주의 휴업을 금지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휴업은 자유이고 등록증 반납 신고 의무만을 삭제한 것인지?

**회신 1**

- A**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시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항 제3호에 따라 “휴업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다만,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에 따른 등록증 반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 Q**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중 주인력(관리사)이 퇴사한 경우 30일 이내 재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A**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기간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상에서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휴업 시에는 실제 영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휴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판결)

II

화재예방법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특수가연물

[화재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관계 법령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① 법 제17조 제5항에서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질의 1

Q 스트리폼이 특수가연물 해당 되는지?



회신 1

A 스타이로폼(스트리폼)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수가연물)에 따라 “플라스틱류”에 해당됩니다.



질의 2

Q 우드칩(나무)를 분쇄하여 나무 가루로 만들고(쌀알 크기) 비료로 사용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2

A 상기 제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수가연물)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에 해당되며 1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수가연물에 해당됩니다.

 **질의 3**


Q 출판사에서 도서(책)를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진행 예정인데 이 경우 도서를 종이 부스러기로 보아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3**

A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종이 부스러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스러기’란 명사로서 잘게 부스러진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종이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책, 서적, 신문지, 등)

 **질의 4**

Q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회신 4**

A 특수가연물이란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을 말합니다.

A 「화재예방법」에서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저장 및 취급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저장”은 물건이나 제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함을 뜻하고, “취급”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을 뜻합니다.

A 기계설비 내 특수가연물을 재료 및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집진기, 공기정화설비 등)

A 또한, 물품을 단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부스러기, 톱밥 등은 저장 및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재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A 다만, 나무부스러기, 톱밥 등은 화재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5

Q 목재 재질의 팔레트가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5

A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목재가공품의 경우 10m³ 이상인 경우 특수가연물로 판단됩니다.



질의 6

Q 도정 공장에서 버를 도정한 후 생성되는 왕겨는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6

A '왕겨'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관계 법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질의 1

Q 한 건물의 여러 창고에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나눠서 적재하면 합산하는지, 또한 외부에 저장하는 경우는 합산인지?(활성탄이 1층 A창고-5톤, 2층 B창고-5톤, 외부-5톤)

**회신 1**

- A** 특수가연물(활성탄)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는 이격 거리와 관계없이 10톤(A실+B실)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외부에 특수가연물(활성탄)보관 시에는 동일 장소에 10,000킬로그램 이상 보관할 경우 특수가연물에 해당됩니다. (내부와 외부 각각 수량)

**질의 2**

- Q**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회사 내에 있는 사내 도로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기준에 의거 6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되는지?

**회신 2**

- A** “도로”는「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도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의 3**

- Q** “벗짚류”중 축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 용도를 단순하게 축사에서 현재 사용하려고 보관 중인 것 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축산 용도로 판매하려고 해외에서 수입하여 수입업자(창고임대업자 등)가 별도 저장창고에서 보관 중인 것도 포함되는지?

**회신 3**

- A** 축산 용도로 판매하려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가축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련 [화재예방법 제24조]

관계 법령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질의 1

- Q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없이 대행업체만 변경 시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받는지?

**회신 1**

- A**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없이 대행업체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2**

- 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나이 제한이 있는지, 만 16세 선임 가능한지?

**회신 2**

- A**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 A**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계인은 물론이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도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미성년자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이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Q**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수신기 설치되어 있는 방재실 근무해야 하는지,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검직을 하고 있기에 주중에만 대응을 할 수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회신 3**

- A** 「화재예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A**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모든 부분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원활한 소방안전관리가 되도록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등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장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체계 등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A** 또한, 소방법관계 법령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상주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질의 4**

- Q** 「화재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3개월 안에 강습 교육을 미이수 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선임명령 통보를 하는 경우 A(기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B(새로운 사람)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A가 다시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되는지, B로 새로운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4**

- A** 「화재예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 적합한 자로선임토록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할 경우 A(강습교육 수료자 및 자격자), B(강습교육 수료자 및 자격자) 모두 선임 가능합니다.

 **질의 5**

- Q** 「화재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으로 감독적 직위에 있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수료하지 못할 경우 미선임으로 처리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5**

- A** 「화재예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 적합한 자로 선임토록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3개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지도 하시면 됩니다.



질의 6

- Q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6

- A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강습교육 수료를 전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 A 따라서 기존 A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명령 기간 내 강습교육 수료(수료증 확인)시 별도의 선임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련(보조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관계 법령

별표 5(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 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라.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질의 1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으로 인정되는“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회신 1

- A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근무경력(관련업무)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행한 소방 관련 근무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경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 자체소방대 또는 종합방재실(방재실 운영시) 근무경력
 - 총괄재난관리자 및 초기대응 근무경력 등
 - 소방관련 업무종사자(관리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업무 등

A 아울러, 근무경력 확인은 소방관련 근무경력이 표시된 경력증명서로 확인, 근무경력은 신고자가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련 [화재예방법 제35조]

관계 법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질의 1

Q 주상복합건축물(특급,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공동관리할 때(현재는 분리되어 각각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가능여부(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펌프실, 수신반 연동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있음)

**회신 1**

- A** 복합건축물이면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특급) 및 각각 소방안전관리자(아파트 해당 부분, 상가 해당 부분, 오피스텔 해당 부분)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A**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의 관한 권원이 분리되어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Q**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종전 법에 따라 권원별로 각각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새로운 선임행위가 있다면 2년까지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2**

- A**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Q** 복합건축물이면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특급) 및 각각 소방안전관리자(아파트 1급, 상가 2급)를 선임 할 경우, 상가 부분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인데 검직이 가능한지, 소방시설관리 업체에 업무대행 가능한지?

**회신 3**

- A**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각각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2급(상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상은 검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 업체를 통해 업무대행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관련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관계 법령

제38조(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의 1

Q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이 신축으로 사용승인일이 12월인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여부,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회신 1

A 소방 훈련과 교육의 취지는 ‘화재를 비롯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실천하여 위험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2월인 경우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시설법 제33조,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

관계 법령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④ 관리업자는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 ② 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질의 1

Q 공공기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통해 건축물 관리(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사업자(민간)의 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지?

회신 1

A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후단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사업자가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II
 화재예방법



질의 2

Q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회신 2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관리업자는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A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범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관리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범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따른 대행업체의 업무범위는 소방,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만 가능)

III

다중이용업소법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5. 기타 질의사항 등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 법령

제2조(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1

Q 지상1층, 2층 내부계단이 있는 복층구조의 휴게음식점에서 1층과 2층이 각각 지면과 닿아 있어도 해당되는지?



회신 1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에 따라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게음식점의 경우 1층 및 2층이 지면과 닿아 있어도 복층구조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질의 2**

Q 지하1층/지상2층(지하1층 근생,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근생) 구조의 건축물에 일반음식점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었을 경우 두 개층 모두 통로로 연결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2**

A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2. 나.에서는 “복층구조 영업장”을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로”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도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건축물 지하1층, 지상 2층 모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을 운반하는 승강기(텀웨이터)는 통로에서 제외되오니, 기타 현장 여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Q 대형복합쇼핑몰 지상1층 푸드코트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회신 3**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은 주된 출입구가 바로 지면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하나, 스트릿형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상가의 등장으로 주된 출입구를 열고 피난상 지장없이 통로나 계단을 통해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단, 통로나 계단 등의 길이는 최대 수평거리 10m 이하, 폭은 1.2m 이상)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평거리를 10m로 정한 것은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비상구 설치를 제외하는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형복합쇼핑몰에 푸드코트 영업장의 거리기준이 지면출입구로 10m 이상이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관서의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Q 지하 1층 주출입문이 선큰가든(sunken garden, 30㎡)의 연결 지면을 통해 통행할 경우 다중이용업이 해당여부?

 회신 4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신 선큰가든의 경우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것으로 보기 어려워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질의 1

Q 입주민만 이용하는 조식 일반음식점 운영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회신 1

A 귀하의 스카이라운지 영업장이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이라고 하여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영업장의 내부 구조 및 피난구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이용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할소방관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업무처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질의 1**


Q 신종다중이용업소 편입이전('22. 6. 8.)부터 공동영업주 명의로 운영중인 영업장에 영업주 한 명이 변경되면 완비증명을 받아야하나요?

 **회신 1**

A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22. 6. 8./행정안전부령 제289호) 이후 (1)영업을 개시하거나 (2)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 “영업주 변경”이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사유가 되는 이유는 양수인이 시행규칙 시행 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완비발급 등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상술한 “영업주 변경”의 범위는 완비증명서 재발급 사유가 되는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범위와 다를 수 있음) 만약, 양수인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완비 발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영업주 B는 시행규칙 시행 이전부터 다중이용업을 운영중에 있었기에, 시행규칙 시행 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완비발급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22. 6. 8.이전에 A영업주가 단독 영업을 하다가 '22. 6. 8.이후 A와 B 공동영업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요건에 해당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의 2**

Q 공간임대업에 미끄럼틀(어린이놀이시설), 정글짐과 트램폴린(비검사대상 유기사설) 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회신 2**

A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간임대업이 위의 경우(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됩니다. 즉, 사안의 공간임대업 등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해당여부는 소관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합니다.

 **질의 3**

Q 콜라텍으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무도장업(무도학원업)등의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인지?

 **회신 3**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3호에 따라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다중이용업(콜라텍업)에 해당합니다. 이때,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소방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위 형태로 영업중인 것을 확인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시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완비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법」등 타 법령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완비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507),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완비 대상인 일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타 법령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완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3호에 따라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다중이용업(콜라텍업)에 해당합니다.

A 이때,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II
다중이용업소법



질의 4

Q 키즈카페의 조건 중 면적, 수용인원 등 조건이 있는지?



회신 4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라 “면적·수용인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5

Q 클레이, 라이플, 권총, 공기총, 석궁중 하나만 해당되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회신 5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7의 3.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내 권총사격장만 해당되며, 실내 종합사격장에 권총사격장이 설치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구조

-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 4) 나)의 기준을 따를 것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질의 1**


Q 1층 ~ 3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대수선허가를 받은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1**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 나. 1) 규정에 의해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별표 2 2. 나. 4) 규정에 따라 가)건축물 주요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이거나,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에 따라 귀하의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1층 피난층까지 「건축법 시행령」 적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구까지 영업장 장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되어 있다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복층구조의 영업장 내부계단은 주출입구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장 여건을 따른 기존 계단의 비상구 적용 여부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Q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2**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비고2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 1)에서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23. 6. 27. 안전번호 23-0377)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였을때, 5층 영업장의 발코니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계단과 연결된 구조는 비상구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3

Q 다중이용업소 지하층 건축법에 의한 “비상탈출구”가 비상구로 완비증명서 발급가능한지?



회신 3

A 관할소방관서에서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른 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난계단의 폭이 적절한지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Q 대형마트 지상 6층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등이 다른용도의 시설(주차장)을 경유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신 4

A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2. 가. 3) 나) 에서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것처럼 대형마트 주차장은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는 구조에서 제외되므로, 첨부된 도면의 영업장 주출입구와 비상구가 이용객의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관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Q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출입구가 방풍실을 통하여 갈수 없는 것 인지?



회신 5

A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3) 비상구 구조에서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풍실이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속실(전실)처럼 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되게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결재 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비고 2.에 따라 비상구의 범위에는 주된 출입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된 출입구에 대해서도 전술한 내용들(구획실로 통하는 구조 금지 및 예외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6**


Q 특정한 경우에만 대각선으로 기준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장의 형태가 다각형 일 때만 대각선으로 봐야 하는 것 인지?

 **회신 6**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용방법으로는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1) 가장 긴 대각선 또는 2)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으로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7**

Q 발코니기준 및 상가건물 테라스를 그밖의 안전한 곳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회신 7**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항에 따라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테라스는 오픈된 구조의 발코니로 사용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주 출입구와의 거리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8


Q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주출입구와 비상구 정확한 실측 거리 측정방법은?

 회신 8

A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설계도서와 영업장 실내면적 및 실측거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으로 작성을 하고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Q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와 비상구 거리가 영업장 장변에 2분의 1이상 모자른 경우 임의 복도로 내부통로 구획하여 비상구 설치가 여부?

 회신 9

A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2에 따라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건물구조상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는 영업장 일부를 축소하여 복도 통로를 만든 후 주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법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밖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다중이용업소법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영업장 구획 및 불연재료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질의 1

Q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도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하나요?



회신 1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있고 동법 10조의 2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상기와 같이 정의되어있더라도 내부구획을 불연재료로 하는 이유는 화재발생시 외·내부인의 대피를 위해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이 되더라도 동법 10조 2의 예외사항이라고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2

Q 영업장 내부 전체를 완전 불연화 한 경우 반자 속까지 구획하여야 하는지?



회신 2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충전 성능이 있는 재료로 그 틈을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것은 천장속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자를 방화석고보드로 설치하여도 천장속의 화염 및 연기확산은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질의 3

Q 비상구 전실은 층간 슬라브부분이 아닌 천장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천장(반자속)과 천장의 맞는 표현은?




회신 3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 다. 1)에 따라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화염·연기로 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천장(반자속)은 ①반자가 없는 경우 층간 슬라브부분(천장)까지 ②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 속 층간 슬라브부분(천장)까지 구획을 말합니다.



질의 4


Q 단란주점 영업장 내부 구획시 모든 천장을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지?

 **회신 4**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영업장은 불연재가 아닌 일반석고보드로 내부를 구획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장 내부는 전체 해당하는 영업장 모든 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영업장의 모든 천장은 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것은 천장속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Q 벽체를 기준할 때 반자마감 기준인지, 천장까지인지 문의함

 **회신 5**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장의(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반자마감이 아닌 천장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 6**

Q 입체형태로 3면이 구획된 구조물의 출입문 없이 전면 개방된 형태일 경우 “구획된 실”에 해당하는지?

 **회신 6**

A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4면을 구획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4면 구획 형태에서 출입문만 없는 경우에는 업종(업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상의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한면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지 혹은 한면 중 출입문 정도의 면적이 개방되어 있는지, 업종(업소)의 특성이 어떠한지(영업장 면적, 조명, 소음, 출입빈도, 실 규모, 개방정도, 이용 형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장식물 사용시 방염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동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질의 1

Q 다중이용업소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 영업장에 방염소파를 방염천으로 교체 해도 되는지?


회신 1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염소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1항 제1목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염성능 이상의 방염소파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방염소파 제작 및 보수등은 방염처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방염소파 외부 마감천 교체 시 방염필증 확인이 어려움이 있고 방염천 교체에 따른 방염소파 내부 충전재와의 함께 소파의 방염성능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기존 사용하시던 방염소파를 현장에서 방염천으로 교체하였다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판단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Q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및 가구류등 방염 해당 여부?


 회신 2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에 따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나 가구류를 제외한 합판이나 목재, 합성수지류 등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은 실내장식물로 구분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들은 설치위치나 가구류의 규격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1) 이동이 가능한 가구류 및 의자 : 해당없음.
- 2)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및 의자. : 해당됨.
- 3) 바닥에 고정하는 가구류 및 의자. : 해당없음.
- 4) 부피가 커서 이동이 어려운 가구류 : 해당없음.
- 5) 목재나 아크릴로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들 : 해당됨.

 질의 3

Q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중 충격흡수 벽매트를 방염된 제품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회신 3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너비10cm 이하 반자동립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시행(22. 6. 8.) 이후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키즈카페 내 충격흡수를 위한 벽매트(쿠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준)불연성 성능을 갖추어야 하나 시중에 생산·유통되고 있는 (준)불연 소재의 제품이 없기에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방염성능을 갖춘 벽매트(쿠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키즈카페의 경우 실내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방염성능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

Q 선처리된 방염필름을 반드시 방염처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4**

A 선처리된 방염필름은 반드시 방염처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처리 방염 필름 시공 후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합판 또는 목재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 이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50% 이하)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방염성능검사에 대해서는 「소방산업과-3089(2013. 7. 11.)호, 방염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현장 처리물품 검사절차 알림」에 따라 2013. 8. 10.(선처리물품검사 기준일)부터 인테리어필름이 부착된 합판·목재를 사용한 현장처리물품은 소방관서에서 방염성능 검사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설계도서(방염 면적)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 관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질의사항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질의 1

Q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시 공용부분(계단,복도,화장실등)도 포함 되는지?



회신 1

A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은 관할구청 인허가 부서 허가면적을 기초로 하고, 건축물 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소관부서 영업장 허가 면적에 포함되었다면 안전시설등을 설치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Q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각각 35㎡ 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실을 합하여 70㎡로 다중이용업을 영업할 경우 완비증명서 해당 여부?



회신 2

- A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이므로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외벽 발코니 구조안전 확인서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 계 법 령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별지 제6호의 3 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질의 1**

Q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은?

 **회신 2**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등의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 이상으로 시공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이때, 적용 대상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발코니의 바닥 재질이 금속인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도 업종의 변경이나 내부 공사 등의 사유로 신규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다중이용업소법



질의 2

- Q** 건축물 외부에 건축물을 지을 당시 발코니가 형성되어 피난발코니 규격에 적합할 경우도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2

- A** 건축물 신축 당시 허가(승인)를 받은 발코니(노대)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활하중 값을 충족하도록 구조계산서를 발급·제출하고 공사 감리, 시공검사 등을 통하여 시공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기에, 별도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 계 법 령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 나. 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Q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1

A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각호 사유(안전시설등의 설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은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구획된 실이 감소하고

III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 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획된 실 변경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이설 및 추가 등 소방시설 공사 관련하여 신규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사 전·후 도면을 지참하시어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기록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8조(소방안전교육)


-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1. 1. 5., 2023. 1. 3.>
-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질의 1**

Q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1명이 2개 이상의 무인 영업장 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1**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의 경우, 종업원 없이 여러개로 운영하는 영업주(법인 포함)의 상황이라면 그 수와

III
 다중이용업소법

별개로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단, 종업원 채용 시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되며 2개 이상의 무인 영업장 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영업장의 거리, 1인의 영업장 관리 개수, 영업장 방문 및 점검 횟수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영업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Q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2**

A 귀하의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라 그 당해 분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한 건물 자체점검표 결과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IV

초고층법

1. 예방 및 대비

1

예방 및 대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질의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후 소화배관구경 및 알람벨브 규격 등을 변경하려면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후 소방시설 설계 변경 사유는 재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된 초고층 건축물등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변경 시에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재협의 대상

- ①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변경
- ②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건축허가변경 요청 시점의 건축공사 진행이 건축공정의 1/2 미만인 경우
- ③ 건축공사의 진행이 건축공정의 1/2을 초과하였으나 건축물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초고층재난관리법」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④ 다만, 사전재난재난영향성검토재협의를 받은 경우라도 건축공사가 기 완료되어 구조적인 변경이 불가한 부분은 재협의 내용에서 제외

※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①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건축법」 제16조 제2항(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 ③ 건축물의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거주밀도(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가 낮아지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질의 2**

- Q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후 소방시설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한 화재 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방법?

 **회신 2**

- A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후 소방시설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한 시공결과 확인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12조(시공), 제14조(완공검사), 제16조(감리) 등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완공하시면 됩니다.

▶ **종합방재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 계 법 령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법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추어 것

 **질의 1**

Q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A 귀하의 종합방재실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해당 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적법하도록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종합방재실 방화구획은 다른부분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방화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V
초고층법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 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 4. 7.>
5. 삭제 <2010. 4. 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 계 법 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질의 1

- Q 지하1층의 판매시설 출입구가 모두 외부에 개방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여부?




회신 1

- A 지하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선큰 설치기준)

 **질의 2**

Q 지하층은 판매시설 용도 계획으로 법적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 설치 대상인데, 주민부대시설 부분에 피난안전구역이나 선큰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2**

A 피난안전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을 지하층 용도에 맞게 위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Q 기존 질의회신에서 지하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는데 ‘피난층의 외부에 개방부분이 상기에 제시한 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과정에서 협의 의제로 제시하여 적정 여부 판단’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을 의미하는지?

 **회신 3**

A 질의에서 제시한 기준은 외부에 개방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에 개방된 면적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시 적정 여부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V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의 등록
2. 소방시설업의 운영
3. 착공신고
4. 감리
5.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1

소방시설업의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기술인력 검임·검직 관련

관계 법령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질의 1

- Q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 시공을 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질문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무면허시공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소방시설은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나요?
- Q [질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공사중간(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무면허업체가 시공한 소방시설을 전면철거를 하고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재시공해야 하나요?

 **회신 1**

A [답변1]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완공검사 신청 주체는 공사업자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완공검사를 받았다’는 질의는 질의사항이 성립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서 신고하였는지? 공사는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하고, 완공검사 신청만 등록된 업체에서 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무면허업체가 시공한 소방시설은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방시설은 현장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설로 발주자(관계인)가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가 완료된 소방시설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재시공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며, 재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답변2]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며,

- ‘공사 중간에 발견되었을 경우 무면허 업체가 시공한 소방시설을 전면철거를 하고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자(관계인)가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서 기 시공된 소방시설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 선정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완공검사를 받을 것으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새로 선정된 공사업자가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Q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방염처리를 한 벽지를 방염처리하지 않은 합판 목재에 부착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방염처리업자만 할 수 있는지?



회신 2

A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방염대상물품 중 선처리물품(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물품)은 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처리물품(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은 시·도지사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방염처리업을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섬유류 방염업’은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경우를 영업범위로, ‘합성수지류 방염업’은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경우를 영업범위로, ‘합판·목재류 방염업’은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하는 경우를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섬유류 방염업과 합성수지류 방염업’은 선처리물품의 방염처리가 가능하고, ‘합판·목재류 방염업’은 선처리물품과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벽지류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섬유류 방염업 또는 합성수지류 방염업이 있어야 하며, 현장의 합판 또는 목재류에 방염도료 등을 이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것으로 합판·목재류 방염업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가 완료된 선처리물품인 벽지를 합판·목재에 부착하는 것은 방염처리가 완료된 벽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이는 방염처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방시설업의 운영[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업 운영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관계 법령

제10조(과징금처분)

- ①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질의 1

- Q** 과징금 처분에 있어서 과징금액을 산정시에 법인인 경우 전체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법인에 속해있는 소방매출만을 산정하는지요?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1

- A**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여기서, ‘해당 업체’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를 말하며, 업종별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법령에서 부과하지 않은 한 사업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관 계 법 령
제13조(착공신고)

-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질의 1

- Q 대규모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는데 종합건설사로서 다른 4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특정 업체(1개)의 소방기술자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착공신고 방법은?


회신 1

-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에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은 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다수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는 공사업자로 모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신고하는 방법은 1개의 착공신고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하는 방법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질의 2**

Q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다음과 같이 종류 교체, 착공신고 등 해당 여부?

Q P형 수신기에서 R형 수신기로 교체할 경우

1. 착공신고 대상인가요?
2. 공사 감리 대상인가요?

 **회신 2**

A (답변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가목에 따라 P형수신기에서 R형수신기로 변경하는 공사는 개설에 해당되어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A (답변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설할 때에는 감리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4

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20조]

감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자 지정 대상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20조]

관계 법령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질의 1

1

Q 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보유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A)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B)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발주자 갑 vs 을1(A), 을2(B) 공동도급계약]?

- A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한 과업중 소방을 제외한 건축,구조,토목 등 설계(감리)업무 전담
- B소방업체 - 공동도급한 과업중 소방설계(감리) 업무만 전담(100% 수행)




회신 1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설계(감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감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체적인 설계(감리) 용역 중 소방시설 설계(감리) 외의 용역은 A건축사사무소,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은 B소방시설설계(감리)업체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합니다.

 질의 2


Q 소방공사현장 감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제연설비 제연덕트의 내화충전구조의 감리주체는 누구인가요?

 회신 2

A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된 배관 관통부, 제연덕트 관통부 내화충전은 소방감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Q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의 경우(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을 전제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가 아닌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 3

A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에서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이 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상기규정인 ①에 해당되어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관 계 법 령
제21조(공사의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 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질의 1

- Q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2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9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300세대 이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래 3가지 사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의 경우에도 현행법규에 맞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자는 법규 시행 전후입니다.)

사례1. 리모델링공사로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전 세대수는 1,000세대이며, 리모델링 이후 총 세대수 1,350

세대로 증가 [350세대 증가]

(단, 사업계획승인일자는 21. 12. 31.입니다.)

사례2. 리모델링공사로 총 세대수가 300세대가 이상이 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전 세대수는 290세대이고, 리모델링 이후 총 330세대로 증가
[40세대 증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23. 5. 31.입니다.)

사례3. 리모델링공사로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전 세대수는 300세대이고, 리모델링 이후 총 325세대로 증가
[25세대 증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23. 5. 31.입니다.)



회신 1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2022. 1. 6.부터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자를 시·도지사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례1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2 제2항은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2022. 1. 6. 법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사업계획승인일자 2021. 12. 31.은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례2 답변) 290세대를 330세대로 리모델링하였다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계획승인 시 330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이 되는 대상이므로 시·도지사가 소방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례3 답변) 300세대를 325세대로 리모델링하였다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의 2**

Q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 12. 1.)) 관련 질의입니다.

-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중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평가기준에서 명시한 “해당 공사감리용역비”의 기준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예시)

- 1) 감리대가 : 2,215,006,478원
- 2) 기초금액 : 2,148,556,280
- 3) 업체의 투찰금액 : 2,148,556,280 중

[질의] “해당 공사감리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

A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제1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인 2,215,006,478원으로 판단됩니다.

VI

화재안전기준(기계분야)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피난기구
4. 제연설비
5. 가스계소화설비
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1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건축물 높이에 따른 옥상수조 설치 여부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1 수원]

관계 법령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써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질의 1

- Q 건축물의 지붕(13m) 및 옥상(9.65m)의 높이가 다른 경우 옥상의 높이가 10m 이하이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옥상수조 제외 가능 여부



회신 1

- A NFTC 102 2.1.2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에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10m 이하인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개폐밸브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3 배관 등]

관계 법령

-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2) 수조 또는 물을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질의 1

Q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에 개폐밸브 설치 시 탬퍼스위치 설치 여부



회신 1

A NFTC 102 2.3.10에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6.2.5에 감시제어반 기능 중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을 위한 탬퍼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전 옥내소화전설비가 수동식 설비인 관계로 탬퍼스위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평소 잠금상태 확인이 불가하며, 화재발생 시 긴급히 폐쇄된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접근이 용이한 가압송수장치 인근의 개폐밸브를 제외한 급수배관 상에 개폐밸브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대의 대형화된 건축물 특성 상 지하 연계 다수의 동이 연결된 건축물의 각 동별로 부득이하게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탬퍼스위치와 함께 설치하여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제외 기준 적용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관 계 법 령

-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질의 1**

Q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장소인 전기실의 수평거리 범위 내 포함 여부

 **회신 1**

A NFTC 102 2.4.2.1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8.1.3에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라고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와 물의 반응성으로 인해 방수구가 면제되는 규정이므로 구획된 ‘전기 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수평거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이외의 각 부분은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Q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회신 2

A NFTC 102 2.4.2.1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층이 건축법령에 따른 층수 산정에 포함되고 NFTC 102 2.8의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2.4.2.1 기준에 따라 수평거리 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3 배관 등]

관계 법령

-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질의 1

Q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가능 여부



회신 1

A NFTC 103 2.3.1.7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7.5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기반응형 헤드는 화재초기 소화능력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다량의 열방출 속도를 갖는 화재에는 기준개수 이상의 헤드 개방으로 펌프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NFTC 103 2.3.1.7 규정에 따라 화재방생 즉시 자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습식유수검지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Q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회신 2

A NFTC 103 2.7.5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반응형 헤드는 반응시간지수(RTI)가 50이하인 속동형 헤드로 비교적 화재의 강도가 크지 않고 물적 피해보다는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과 유사한 장소(예, 의원의 입원실, 공장 내 숙직실 등)의 경우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Q ‘노유자시설의 거실’ 해당 여부(조기반응형헤드 설치 장소의 범위)



회신 3

A NFTC 103 2.7.5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내 대기공간, 로비 및 창고는 상기 기준에 따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유자시설의 거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배수관 재질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 법령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1

Q 습식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배관 끝에 설치하는 배수관을 후렉시블(신축배관) 사용 가능여부

회신 1

A NFTC 103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배수관'은 유수검지장치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후렉시블(신축배관)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험 시 소화펌프의 작동으로 가압수가 방사되는 상황에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치(배관의 재질, 배관이음 방법 등)하여야 합니다.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7 헤드]

관 계 법 령

- 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질의 1

- Q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는 경우 표 2.7.8 적용 가능여부



회신 1

- A NFTC 103 2.7.8에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청 업무지침(2019. 10. 22.)에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 로 할 수 있다.”라고 시달되었습니다.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는 보 아래 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집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는 보는 벽으로 간주하여 2.7.8 단서 적용), 참고로 NFPA에서도 처장 아래 22in.(559mm)를 초과하여 이격된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는 헤드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최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지 않는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경우에 표 2.7.8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여 상기 2.7.8 단서 및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보의 폭이 1.2m를 초과하면 보 하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탑층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 헤드 등]

관 계 법 령

- 2.7.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질의 1

Q 옥상(탑)층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회신 1

A NFTC 103 2.7.1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9호에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층수 산정에만 제외될 뿐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건축물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층의 건축물 공간(실)이 NFTC 2.12의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스프링클러설비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NFTC 2.3.1.3에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옥상층은 건축관련 법령에 층수에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방호구역 설정(유수검지장치 추가 설치)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면한 부분의 방화구획 관련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 제어반]

관계 법령

-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Q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회신 1

A NFTC 103 2.10.3.1에 감시제어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3.1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실에 외기에 면하여 설치되는 창호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방화구획 등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헤드 제외 장소 기준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관 계 법 령

-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2.12.1.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다·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질의 1

Q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회신 1

A NFTC 103 2.12.1.14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 8. 14. 전국 소방관서로 시달된 「2023년 7월 소방시설 아고라 토론회 결과」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소에 NFTC 301에서 규정하는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대피실, 건축법령에 따른 아파트에 하향식피난구를 ‘발코니가 아닌’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 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실 등의 해당 여부를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Q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회신 2

A NFTC 103 2.12.1.4에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MRI실, CT실 등을 수손피해 우려만으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수손 피해가 우려된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가스계소화설비 등 설치(대체)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Q 우수조 펌프실 및 관리층 헤드 제외 적용 여부

회신 3

A NFTC 103 2.12.1.8에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NFTC 2.12의 헤드의 설치 제외는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소,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펌프 및 펌프 기동을 위한 전원공급장치만 존재하는 공간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조의 ‘관리층’과 관련하여 관련 도면 등 자세한 현장상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4

Q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회신 4

A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유사한 구조로 건축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대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관 계 법 령

-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나.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미터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5조 제1항에 따른 것



질의 1

Q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및 소화수조 필수 적용 여부



회신 1

A NFPC 609(2024. 1. 1. 시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80LPM)로는 화재하중이 높은 창고화재에서 화세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방수량이 2배(160LPM)인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원의 양을 2배로 하여 헤드 설치개수(최대30개)에 3.2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NFPC 609 제11조(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시(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수원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상수도소화용수 설치 시 소화수조 추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Q NFPC 609(2024. 1. 1. 시행)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회신 2

A NFPC 609(2024. 1. 1. 시행) 제정으로 일반창고 및 랙식창고 모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원칙)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랙식창고의 인랙헤드 또한 라지드롭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행 일반 스프링클러헤드(분당 80리터)로는 화재하중이 높은 창고화재에서 화세제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수량이 2배(분당 160리터)인 라지드롭형 헤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랙식창고의 경우 NFPC 609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인랙헤드로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물품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장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Q 적층식 랙의 방호구역 면적 산정 기준

 회신 3

A NFPC 609(2024. 1. 1. 시행) 제3조 제4호에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3호에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적층식 랙의 각 단의 바닥면적’은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의 각 층의 바닥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 그림 5에서 ‘층 선반’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피난기구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적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계 법령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설치장소별 층별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교¹⁾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근린 생활시설중 입원 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조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 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²⁾ • 공기안전매트³⁾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비고]

-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능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3)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의 1

Q 노유자시설 4층에 화재안전성능기준 특레부분을 적용하여 구조대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1

A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에 따라 노유자시설 4층 이상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구조대의 경우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능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8조(설치·관리기준의 특레)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하여 소방서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방화문 설치된 대피공간 피난기구 제외 여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4 갯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경우



질의 1

Q 신축아파트 공사장 방화문 설치된 대피공간(2제곱미터 이상) 인데 3-10층 완강기 설치 여부



회신 1

A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에 따라 갯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경우 피난기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또한, 해설서에서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란 수평 또는 수직 즉 옆 세대나 아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하지만, 대피공간 설치로는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없고, 그 이유는 대피공간은 화재공간 내에 있는 체류형 대책이기 때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없는 단순 대피공간만 설치만으로 피난기구를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제연설비



제연설비 제연경계벽 재질관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관계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질의 1

Q 제연경계벽을 방화석고보드(12.5T)로 제작하여 석고보드 위 마감을 인테리어 무늬목 합판(가연물)을 설치 가능 여부



회신 1

A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501)」2.1.2.1에서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방화석고보드 위에 인테리어 무늬목 합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가스계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모듈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관계 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 저장용기

2.3.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3.1.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질의 1

- Q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수신반(제어반)을 설치할 경우 비상 전원용 축전지가 있기때문에 방호구역을 방화구획하고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1

- 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2.3.1.1 에서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3.1.4에서 “저장 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따라서 모듈러 형태의 저장용기인 경우 방호구역 내에 별도의 방화구획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옥내소화전과 펌프 겸용 시 내진설계적용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

제2조(적용범위)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질의 1

Q 옥내소화전과 간이스프링클러 펌프 겸용시 간이스프링클러 내진 적용 여부?



회신 1

- A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스계, 분말)'에 국한 됩니다.
- A 따라서, 질문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단독 구성은 내진설계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A 다만, 내진설계적용 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배관(가압송수장치 포함)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진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파손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진설계기준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에 의해 내진설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Q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수신기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적용범위) 제1항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 A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수신기의 경우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직직선 배관에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영향구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 1

Q 4방향버팀대의 영향구역은 4m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횡방향버팀대 기준으로 6m 까지 가능한지?

회신 1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제3호에서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한쪽방향으로 4m가 영향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입형펌프)의 내진설계 적용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5조】

제5조(가압송수장치)

- ①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Q 입형펌프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조안전성 검토는 구조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3조의 2(공통적용사항) 제4항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A 해설서에서 앵커볼트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도 이 기준의 제3조의 2 제2항(지진하중)과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기술하고 있고, 이는 일반형과 입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A 따라서, 입형펌프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할소방서에 구조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요성 이음장치의 설치위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4조】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 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Q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적용시 수조, 밸브, 가요성이음장치 순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계산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수조, 밸브, 가요성이음장치 순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화재안전기준(전기분야)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4.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5. 소방시설 배선
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도통시험 기능 관련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8 배선

- 2.8.1.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8.1.3.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2.8.1.3.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2.8.1.3.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질의 1

Q 현재 화재수신기의 도통시험 전압계 고장으로 도통시험이 어렵습니다. 도통시험 불가로 인한 수신기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통시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A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8.1.3에서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시험장치)에 따라 수신기에서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수신기에서 도통단선 신호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3. 8. 11.)]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시행 2013. 8. 11.) 제4조 경계구역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

질의 1

Q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회신 1

A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0호(시행 2013. 8. 11.)]」의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제4조(경계구역)에 15m 미만의 계단을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연기감지기를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15m 미만 계단이 경계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 **교차회로 감지기 구성 관련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203) 등]

관 계 법 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203)**」2.1 **경계구역**

2.1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4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103)**」2.1 **경계구역**

2.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질의 1**

Q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의 교차회로 감지기와 헤드가 설치되지 않는 화장실의 감지기를 같은 회로로 구성해도 소방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신 1**

A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203)」2.1.4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103)」에서 방호구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하므로, 귀하의 첨부자료의 화장실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의 경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기동을

VII

화재안전기준(전기분야)

위한 교차회로의 감지기가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로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Q 아날로그감지기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단독회로가 아닌 교차회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날로그감지기의 교차회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설치개수는 교차회로 적용 수량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2

A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신뢰도가 높아 교차회로로 구성하지 않아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기동감지기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를 교차회로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별 감지면적을 고려하여 교차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감지기 수량의 2배의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재안전기준 상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교차회로로 구성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교차회로로 구성한다면, 소화설비가 작동하기까지 지나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문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504)]

관계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504)」 2.1 전원 및 콘센트 등

- 2.1.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2.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2.1.2.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 2.1.2.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 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2.1.2.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1.2.7 비상콘센트용의 폴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 2.1.2.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1

- Q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A 504)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전원회로가 “전용회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1

- A**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2.1.2.2에서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은 각층에 여러 개의 비상상콘센트가 있을 경우 최소한 2개 이상의 전용간선을 설치하라는 것으로 이를 하나의 전원용 간선에서 모두 분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간선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콘센트 전원을 모두 동일한 간선에서 분기할 경우 하나의 간선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콘센트가 전부 사용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적용 문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관계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질의 1

- Q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회신 1

- A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5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효점 등 시간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1.5.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2.1.1.5.2(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 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초고층 등의 소방대상물의 피난경로는 피난대피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효 작동시간을 60분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2안과 같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에 비상조명 등의 예비전원 및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전기저장시설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구성 관련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관계 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1.7 용어의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1.7.1.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질의 1

- Q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를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정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중 위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지 않고 설치되는 경우에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A 옥외형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의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1.2에 따라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구획실 구성요건으로 컨테이너나 패널로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합니다.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관계 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2 스프링클러설비

- 2.2.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2.1.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 2.2.1.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 이상인 경우에는 230㎡) 1㎡에 분당 12.2 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2.2.1.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m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 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

질의 1

Q NFPC 607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관련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종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표기가 없는데 그렇다면 헤드의 종류는 폐쇄형 또는 개방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도 지장이 없는지?

회신 1

A 전기저장시설의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관련 질의로「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2.2.1.1에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로 설치하라고 명시됨에 따라 폐쇄형헤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저장시설 비상전원 용량 관련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관 계 법 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2 스프링클러설비
 2.2.1.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2.4.2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2.2.1.5 스프링클러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2.2.1.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2.2.1.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8(송수구)에 따라 설치할 것

 **질의 1**

Q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시 소화펌프의 작동에 한하여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방시설물은 각각 소방시설물의 비상전원 법령에 의한 작동시간만 이행하여 비상발전기의 용량계산을 하여도 지장이 없는지?

 **회신 1**

A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소화펌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용량 선정하여야 하며, 그 외 소방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 안전기술기준(NFTC 607)」1.6.2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각 소방시설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 시간에 따른 부하를 비상전원 용량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전기저장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관련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관계 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2.5 자동화재속보설비

2.5.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호 사목”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것인지?



회신 1

- A 전기저장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적용에 대한 질의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전부 개정[22. 12. 1.]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비상전원 관련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관 계 법 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6 배출설비
 2.6.1 배출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6.1.2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2.6.1.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2.6.1.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질의 1**

Q 배출설비의 전원은 소방 비상전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배출설비의 전원을 소방 비상전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정한 30분의 작동시간으로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1**

A 배출설비 비상전원 용량에 관한 질의로 현재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는 배출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 화재 시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폭발 가능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출설비 부하를 비상전원 용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VII

화재안전기준(전기분야)

5

소방시설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선 배선 관련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 배선

- 2.8.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2.8.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1.2.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질의 1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거나 R형수신기용으로 실드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기준(NFTC)에 따라 케이블공사 방법(케이블 트레이에 포설 등-내열배선과 무관)으로 시공 가능한지, 또는 성능기준(NFPC)에 따라 금속제 전선관 등에 수납하는 등의 내열배선 공사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A**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실드선이라고 해서 모두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노출 배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시공하도록 제조된 케이블이라면 케이블 트레이 등에 노출 배선이 가능하겠으나 그 밖에 전선의 경우 배관에 입선하여 내열배선의 시공방법으로 배선하여야 합니다.

6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FM/DMB 신호 겸용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관계 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1

Q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데 공중선(안테나) 설비를 공용하여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 1

A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테나의 경우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2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대상 지하주차장에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따른 안테나 등 설비들은 상기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에 무선통신보조설비와 FM/DMB설비를 하나의 안테나로 통합사용 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두가지 기준을 상호 만족시킨다는 자료와 입증은 업체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유도등 및 유도표지



통로유도등 크기 적용 관련 문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303)]

관계 법령

표 2.1.1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3. 위탁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시설·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의 것)·오피스텔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5.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	• 통로유도등
6.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정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비고]

1. 소방서장을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Q 현재 화재안전기술기준에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설치기준이 용도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실통로유도등 및 계단, 복도통로유도등은 대형,중형,소형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피난구유도등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소형으로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신 1**

A 통로유도등 크기의 경우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에서 계단통로유도등을 제외한 통로유도등의 표시면의 크기와 평균 휘도를 정하여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로유도등에 대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A 303)」에서 설치장소별 크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 대상 및 장소에 적합한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도통로유도등 설치지점 관련 문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관계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3.1.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3.1.1.2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 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2.3.1.1.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3.1.1.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질의 1**

Q 피난구에서부터 첫번째 통로유도등은 20m 이내에 설치되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도면상 중심부에 피난구유도등과 좌/우측 통로유도등 1개씩 설치된 현재 배치가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유도등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따라 통로유도등은 20m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첨부도면에서 피난구 유도등은 제외하고 보자면 좌/우측 통로유도등은 약 29m의 보행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난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A지점에 통로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법적으로 만족하는 건지?

 **회신 1**

A 복도통로유도등의 경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1.2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피난방향으로의 보행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첨부자료에 피난구로부터 좌, 우측의 통로유도등의 거리가 각각 20m 이내에 설치된 상태로 그사이에 추가로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화재안전기준(전기분야)

수직형 피난구유도등 위치에 거실통로유도등으로 설치 가능 여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관계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1

Q 피난구 앞 피난구유도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난구유도등에 수직된 방향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난구유도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것을 피난구유도등이 아닌, 거실통로유도등으로 달아도 되는지?

회신 1

A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방향을 명시하는 거실통로유도등과는 다른 종류의 유도등으로 수직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위치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획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국장 임원섭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제도계 제도계장 정홍영, 홍성일, 이정원, 서민지

안전기준계 이준원, 민정기

소방기술민원센터 김종호, 이건세, 김세원, 송종호, 임선길,
권태민, 차승학, 장현준, 최라령

2024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발 행 처 |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TEL. 1661-9119

FAX. 044-715-7621

| 발 행 일 | 2024년 1월

| 인 쇄 처 | 문화사가을 (TEL. 042-226-7475)

〈비매품〉

